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1)공항과 항만 통관감시 62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2)수입물품 현장검사 52명, 3)수입신고 사후심사 32명, 5)수입물품 현장검사 7명을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을 1년 연장(2021년12월31일까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이 상향되었던 세관관서의 인력 3명(6급 3명)을 종전의 직급(8급 3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34조제2항 단서부터 제4항 단서까지 중 “5퍼센트”를 각각 “7퍼센트”로 한다.

별표 8의2 중 관세주사 “855”를 “852”으로 하고, 관세서기 “965”를 “968”으로 한다.

별표 10를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6조 관련)

1. 평가대상 조직

조 직	정 원	평 가 기 간
1) 부산세관 협업검사센터	5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2022년 9월 30일까지

2. 평가대상 정원

업 무	정 원	평 가 기 간
1)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52명 (6급 9명, 7급 20명, 8급 14명, 9급 9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수입신고 사후심사(세관관서)	32명 (6급 4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8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3) 공항과 항만 통관감시(세관관서)	62명 (6급 3명, 7급 17명, 8급 19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나급 3명, 전문경력관 다급 6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4)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7명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5) 공항과 항만 통관감시(세관관서)	28명 (6급 1명, 7급 9명, 8급 8명, 9급 7명, 전문경력관 다급 3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6)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0명 (7급 5명, 8급 5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7)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30명 (7급 2명, 8급 4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7명, 전문경력관 다급 15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u>5퍼센트</u>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6명(관세주사 5명, 관세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u>7</u> <u>퍼센트</u> -----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 제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중앙관세분석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u>5퍼센트</u>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1명(관세주사보 1	②----- ----- ---. ----- ----- ----- <u>7퍼센트</u> ----- ----- ----- ----- -----

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④ 세관관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으며, 별표 8의2의 정원 중 6명(관세주사보 6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 ⑦ (생략)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③ -----

---. -----

----- 7퍼센트 -----

-----.

④ -----

-----.

----- 7퍼센트 -----

-----.

⑤ ~ ⑦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관세청과

개정령 부칙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정원 3명(6급 2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201 7년 12월 31일까지, 2명(6급 1 명, 7급 1명)은 <u>2020년 12월 31</u> 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간) ----- ----- ----- ----- ----- <u>2022년 12월 31일</u>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		•		•			
		관세주사		<u>855</u>		<u>852</u>		-3	
		•		•		•			
		•		•		•			
		관세서기		<u>965</u>		<u>968</u>		+3	
		•		•		•			
		•		•		•			